

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별표 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. 다만,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 중 “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”를 “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5조 제3항 중 “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”을 “기타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〈별표 2〉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-|---|
| <p>제3조(정화조 등의 청소통지) <u>①~②(생략)</u> <u>③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〈신설〉</p> | <p>제3조(정화조 등의 청소통지) <u>①~②(현행과 같음)</u> <u>③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u> <u>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제8조(수수료 부과·징수) ①(생략) <u>〈신설〉</u></p> <p>②(생략) ③(생략)</p> | <p>제8조(수수료 부과·징수) ①(현행과 같음) <u>②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. 다만,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③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 <u>④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</p> |
| <p>제12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)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</p> | <p>제12조(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)..... <u>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| | | 개 정 (안)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〈별표 2〉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(제8조 제1항 관련) | | | | 〈별표 2〉(제8조 관련) | | | |
| 구 분 | 부과기준 | 수 수 료 | 적 용 기 준 | 구 분 | 부과기준 | 수 수 료 | 적 용 기 준 |
| 분뇨수집 | | | • 부산 직할시 분뇨처리 | | | | •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 |
| 운반수수 료 | <u>18ℓ</u> | <u>267원</u> | 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| | | | 따른수수료징수조례에 의 |
| | | |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| | | | 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|
| | | | 한 분뇨처리비 포함 금 | | | | 금액임 |
| | | | 액임 | | | | • |
| | | | • 배출자로부터 수집운 | | | | |
| | | | 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 | | | | |
| | | | 한다. | | | | (삭 제) |
| | | | • 요금계산시 10원 미만 | | | | |
| | | | 은 버린다. | | | | |
| 정화조 청 | <u>기본금액</u> | <u>14,725원</u> | • 부산 직할시 분뇨처리 | | <u>기본</u> | <u>16,200원</u> | •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 |
| 소수수료 | <u>0.75m³ 당</u> | | 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| | <u>0.75m³</u> | | 따른수수료징수조례에 의 |
| | (단, 0.75 | |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| | | | 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|
| | m ³ 미만은 | | 한 분뇨처리비 포함 금 | | | | 금액임 |
| | <u>0.75m³로</u> | | 액임 | | | | • |
| | <u>본다)</u> | | • 청소된 오니(오수를 | | | | |
| | | | 포함한다)의 양에 따라 | | | | |
| | | | 징수한다. | | | | |
| | | | •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 | | | | |
| | | | 은 버린다. | | | | |
| | <u>초과금액</u> | <u>1,040원</u> | | | <u>초과금액</u> | <u>1,170원</u> | |
| | <u>0.1m³당</u> | | | | <u>0.1m³당</u> | | |
| | (신설) | | | | <u>할증</u> | <u>기본 및</u> | • |
| | | | | | <u>(개별</u> | <u>초과료</u> | |
| | | | | | <u>청소시)</u> | <u>의 5%</u> | |

[별표 2]

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(제8조 관련)

| 구 분 | 부 과 기 준 | 수 수 료 | 적 용 기 준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분뇨수집·운반 수 수 료 | 10ℓ | 20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 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 비가 포함된 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 |
| 정화조청소 수 수 료 | 기본(0.75m ³ 이하) | 16,20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 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|
| | 초과(0.1m ³ 당) | 1,17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소된 오니(오수포함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|
| | 할증(개별청소시) | 기본 및 초과료의 5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 다. |